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II. 검토의견

안 제28조의3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 -----협조요청을 받은 자----- -----.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u>기반 시설</u>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 ----- ----- ----- ----- ---<u>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u>-----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